

議案檢討報告書

1. 發議 또는 提出者 : 大田廣域市長
2. 件 名 :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3. 議案 要旨 : 別添 參照
4. 檢討 意見 : 別添 參照

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.

1997年 2月 12日

文教社會 委員會
專門委員 金 鎮 鉉



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與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檢 討 報 告 書

1997年 2月 12日

文 教 社 會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檢 討 報 告

이 條例案은 1997年 2月 4日 大田廣域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
1997年 2月 5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1. 提 案 理 由

기부금품모집규제법 ('95. 12. 30) 및 동법시행령 ('96. 7. 1) 이 전
문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

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,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
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2. 主 要 骨 子

기금의 조성규정을 시의 출연금, 이자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
하고, 불합리한 강제조성규정 등을 삭제 개정함.

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)

3. 檢 討 意 見

- 동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잠식당하는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 재원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의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1992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조례 제2,242호로 제정 공포된 후 그동안 실제 운용과정에서 여건변동 등에 따라 4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안임

- 동조례안의 금번 주요개정 내용은,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 5,126호로 전문개정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15,104호로 전문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, 개정안 제3조에서 “지방자치단체에서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%이상 출연한다”는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은 본조례 제정당시의 의지를 퇴색시키고 매우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조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조례안 제3조의 삭제 문제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